

문서번호	인사처-2577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6.04.15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124호

팀장	인사처장	경영전략본부장	이사장	
협 조	팀장			

공무직직원관리내규 개정(안)

2016.

공무직직원관리내규 개정(안)

□ 개정사유

- 정규직(일반, 서비스, 공무직) 보수지급일 일원화 및 경비직종의 소정근로시간 정비

□ 주요내용

○ 보수지급일 일원화

- 가. 일반 및 서비스직 직원의 보수지급일을 20일로 일원화하였으나 공무직 직원의 경우 익월에 지급토록 되어있어 당초 보수지급일의 일원화 취지와 괴리
- 나. 현행 근무 익월에 지급토록 되어있는 공무직 직원의 보수지급일을 일반직 직원과 동일하게 변경
 - 익월 20일 → 매월 20일

○ 경비직종 소정근로시간 재산정

- 가. 기존 경비직종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휴게시간을 6시간으로 산정
- 나.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8시간으로 산정됨에 따라 경비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 조정 : 270시간 → 243시간
 -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 : $365\text{일}/2\text{일} \times 16\text{시간(일)}/12\text{월}$

□ 행정사항

- 이사장 결재 후 공포·시행

붙임 : 공무직직원관리내규개정(안) 1부. 끝.